#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553

발의연월일: 2024. 9. 3.

발 의 자:전진숙·김선민·임호선

이기헌 • 박희승 • 김 윤

김원이 · 남인순 · 김남희

김정호 · 김윤덕 · 권칠승

유후덕 • 이용우 • 서영석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취지는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므로 평가 실시뿐 아니라평가 결과의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여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

#### 법률 제 호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를 가진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제52조(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생 략)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u> &lt;신 설&gt;</u>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를 가진다.
<u> &lt;신 설&gt;</u>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
		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